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민성 의원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김민성

찬 성 자 : 김근한· 김낙관·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박교상· 박세채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장세구
정지원· 허민근 의원(18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복무조례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개정(안 제9조 및 별표3)
-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사용 기한, 연가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p> <p><u><신 설></u></p>	<p>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u>5년</u> ----- ----- ----- ----- ----- -----</p> <p>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사용 기한, 연가전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p>

■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즉, 호봉획정시 유사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